

## 분담금의 면제 · 경감에 따른 감면사업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담금의 면제 · 경감 및 가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2년도 방송사업자 분담금의 감면자 · 감면금액 및 감면사유를 공개합니다.

### 1. 감면자 · 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단위 : 원)

구분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주)영서방송	346,906,920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192,863,850	
	(주)강원방송	189,061,760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
	(주)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132,308,450	
	금강방송(주)	43,907,220	
	(주)씨씨에스충북방송	20,836,950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20,042,470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	11,886,090	
	하나방송(주)	7,922,070	
	소계	965,735,780	
지상파 방송사업자	OBS경인TV(주)	770,150,250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
	(재)CBS	310,321,230	
	(재)평화방송	103,729,730	
	(주)YTN라디오	57,340,480	
	(주)경인방송	4,132,200	
	(재)광주영어방송	1,319,040	
	소계	1,246,992,930	
<b>합계</b>		<b>2,212,728,710</b>	

## 2. 근거법령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제1항

①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해당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분담금의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